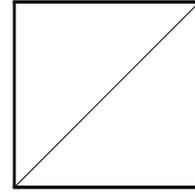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53 호	보 고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2. 8. (제 22 차)	

'20년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제출 연월일	2021. 12. 8.

1. 보고주문

- (주)한국씨티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케이뱅크, (주)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20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현황 >

대상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주)한국씨티은행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COIC, 99.98% 보유)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Standard Chartered PLC, Standard Chartered Bank(Hong Kong) Limited,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100% 보유, SPC)
(주)케이뱅크	비씨카드(주) (34.00% 보유), (주)우리은행 (19.90% 보유)
(주)카카오뱅크	(주)카카오(31.78% 보유) 한국투자금융지주(주) (4.67% 보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27.10% 보유)

2. 보고이유

-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상기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들이 '20년말 기준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비씨카드와 (주)우리은행을 제외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들은 '20년말 기준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주)비씨카드와 (주)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다만,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곤란하고, 위반금액 또는 위반건이 적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이미 해소(대출금 상환, 임원 사임에 따른 대주주 지위 상실)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비씨카드와 (주)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요건(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요건)에 대한 충족명령은 하지 아니함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붙임> 참조
-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음
 -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유의사항 통보('21.9.29.)
-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
- 2021년 제22차 금융위 안전소위('21.12.3.) 심의필

< 별지 >

(주)한국씨티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케이뱅크, (주)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Standard Chartered PLC,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Limited,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 (주)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주)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년말 기준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주)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주)비씨카드와 (주)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다목의 요건((주)케이뱅크의 (주)비씨카드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우리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곤란하고, 위반 금액 또는 위반 건이 적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이미 해소(대출금 상환, 임원 사임에 따른 대주주 지위 상실)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비씨카드와 (주)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요건(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요건)에 대한 충족명령은 하지 아니함

※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

관계 법규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 (생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 ⑨ (생략)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은행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 법인이 그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

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 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5조 <별표 1> 및 영 제11조제2항 <별표 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②~⑦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1 및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8]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은행법시행령」 제5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3 및 [별표2-8] 관련)

구분	은행법 시행령[별표1]	은행업감독규정[별표2-8]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가목 관련 가. 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시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p> <p>라. 기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p> <p>2. 영 제3조 <별표 1>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p> <p>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p> <p>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p> <p>다. <삭제></p> <p>라. <삭제></p> <p>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장후기업</p> <p>3. 영 제3조 <별표 1> 제1호 마목 1) 관련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 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p>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	

<p>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p>	<p>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금등인 경우</p>	<p>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영 제3조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p> <p>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p>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p>	<p>5. 영 제3조 <별표 1> 제6호 가목 관련</p> <p>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p>

	<p>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기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6. 영 제6조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p>
<p>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특례법 별표 및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8]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5조 및 [별표],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3 및 [별표2-8] 관련)

구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	은행업감독규정[별표2-8]
<p>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은 제외한다)인 경우</p>	<p>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채무건 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8조 제1항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p>	<p>1. 법 제2조 <별표> 제1호 가목 관련</p> <p>가. 영 제26조 제1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p> <p>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p> <p>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p> <p>2. 법 제2조 <별표> 제1호 나목 관련</p> <p>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p> <p>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p> <p>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p> <p>다. <삭제></p> <p>라. <삭제></p> <p>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p>

	<p>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p>	<p>3. 법 제1조 <별표> 제1호 마목 1) 관련</p> <p>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p>
--	---	--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법 제3조 <별표>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해당개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p>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p>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법 제3조 <별표> 제6호 가목 관련 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p> <p>6. 법 제3조 <별표>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p>
<p>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이 100</p>	

	<p>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은행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8024